



2026학년도 전남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2024. 4.

- 입학본부 -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전남대학교 학부입시 홈페이지(<https://admission.jnu.ac.kr>)를 통해 공고합니다.

I

주요 변경사항

1

학교폭력 조치사항 성적반영

구분	전형명	변경사항												
반영방법	전체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조치사항 성적반영 -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 - 그 외 전형: 전형총점 감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학생부교과 / 실기실적 위주 전형</th> <th>수능 위주 전형</th> </tr> </thead> <tbody> <tr> <td>1호 ~ 3호</td> <td>-5점</td> <td>-15점</td> </tr> <tr> <td>4호 ~ 5호</td> <td>-10점</td> <td>-25점</td> </tr> <tr> <td>6호 ~ 9호</td> <td>-20점</td> <td>-50점</td> </tr> </tbody> </table>	구분	학생부교과 / 실기실적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1호 ~ 3호	-5점	-15점	4호 ~ 5호	-10점	-25점	6호 ~ 9호	-20점	-50점
		구분	학생부교과 / 실기실적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1호 ~ 3호	-5점	-15점										
4호 ~ 5호	-10점	-25점												
6호 ~ 9호	-20점	-50점												

2

지원자격 변경

구분	전형명	변경사항
지원자격 변경	학생부교과 (만학도)전형	- 검정고시 및 국외고 출신자 지원자격 부여



II

2026학년도 전형요약

모집 구분	전형유형 및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정원내	정원외	합계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일반)	1,167	-	1,167	[일괄선발] 학생부 100%	적용 ¹⁾
		학생부교과(지역인재)	983	-	983		
		학생부교과(지역균형)	9	-	9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	147	-	147	[일괄선발] 학생부 100%	일부적용 ²⁾
		학생부교과(사회다양성)	32	-	32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	173	173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	-	62	62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한부모)	-	5	5		
		학생부교과(만학도)	-	5	5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	10	10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	43	-	43	· 1단계: 학생부 100% ※ 음악교육 5배수, 체육교육 3배수 · 2단계: 1단계 80% + 실기 20%	적용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	37	37	· 1단계: 학생부 100% (5배수) · 2단계: 1단계 80% + 면접 20%	미적용	
	학생부교과전형 소계			2,381	292	2,673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 ※ 광주캠퍼스 모집단위	866	-	866	· 1단계: 서류평가 100% (3배수) ※ 의학계열 6배수 선발 ·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일부적용 ²⁾	
	학생부종합(후계농업경영인)	5	-	5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I) ※ 여수캠퍼스 모집단위	163	-	163	[일괄선발] 서류평가 100%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	70	70	[일괄선발] 서류평가 60% + 면접 40%		
학생부종합전형 소계			1,034	70	1,104		
실기 /실적	실기/실적(예능실기)	154	-	154	· 학생부 + 실기	미적용	
실기위주전형 소계			154	-	154		
정시 모집	수능	수능(일반)	864	-	864	[일괄선발] 수능 100%	미적용
		수능(지역인재)	57	-	57		
	실기 /실적	실기/실적(예능실기)	5	-	5	[일괄선발] 수능 + 실기	미적용
수능위주전형 소계			926	-	926		
학부 계			4,495	362	4,857		

1) 여수캠퍼스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수산생명의학과 제외)

2) 의학계열(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운영함

※ 수시모집 미선발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23쪽 참고)



Ⅲ

수시모집

1

전형유형별 지원 자격

가.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명	지원 자격						
학생부교과 (일반)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 호남 지역(광주·전남·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입학부터 졸업까지)한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 호남 지역(광주·전남·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입학부터 졸업까지)한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구분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학생부교과 (사회배려 대상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국가보훈대상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td> </tr> <tr>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자격	국가보훈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구분	지원자격						
국가보훈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전형명	지원 자격																
<p>학생부교과 (사회다양성)</p>	<p>-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중 아래 지원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355 371 1426 1128"> <thead> <tr> <th data-bbox="355 371 571 439">구분</th> <th data-bbox="571 371 1426 439">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5 439 571 517">다문화가정</td> <td data-bbox="571 439 1426 5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td> </tr> <tr> <td data-bbox="355 517 571 595">다자녀가구</td> <td data-bbox="571 517 1426 595">• 부모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지원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td> </tr> <tr> <td data-bbox="355 595 571 707">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생활자</td> <td data-bbox="571 595 1426 707">•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또는 청소년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생활자</td> </tr> <tr> <td data-bbox="355 707 571 786">소아암병력자</td> <td data-bbox="571 707 1426 786">• 소아암병력자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td> </tr> <tr> <td data-bbox="355 786 571 943">대안학교장추천자</td> <td data-bbox="571 786 1426 94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td> </tr> <tr> <td data-bbox="355 943 571 1021">직업군인의 자녀</td> <td data-bbox="571 943 1426 1021">•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 중인 자의 자녀 (퇴직군인의 자녀는 지원불가)</td> </tr> <tr> <td data-bbox="355 1021 571 112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td> <td data-bbox="571 1021 1426 112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자격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자녀가구	• 부모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지원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생활자	•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또는 청소년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생활자	소아암병력자	• 소아암병력자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대안학교장추천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업군인의 자녀	•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 중인 자의 자녀 (퇴직군인의 자녀는 지원불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자녀가구	• 부모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지원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생활자	•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또는 청소년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생활자																
소아암병력자	• 소아암병력자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대안학교장추천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업군인의 자녀	•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 중인 자의 자녀 (퇴직군인의 자녀는 지원불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p>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p>	<p>-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p> <p>※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55 1476 1426 1868"> <thead> <tr> <th data-bbox="355 1476 496 1554">구분</th> <th data-bbox="496 1476 1426 1554">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5 1554 496 1711">12년 과정 (초·중·고 전 과정)</td> <td data-bbox="496 1554 1426 171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td> </tr> <tr> <td data-bbox="355 1711 496 1868">6년 과정 (중·고과정)</td> <td data-bbox="496 1711 1426 1868">•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td> </tr> </tbody> </table> <p>※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p> <p>※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p>	구분	지원자격	12년 과정 (초·중·고 전 과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6년 과정 (중·고과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구분	지원자격																
12년 과정 (초·중·고 전 과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6년 과정 (중·고과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전형명	지원 자격										
학생부교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p>-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p> <p>※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준학과가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p> <p>※ 단, 전입학 학생은 "기준학과"의 교과를 30단위(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57 510 1425 728">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특성화고 졸업자</td> <td>•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특성화고교를 졸업(예정)하고, 지원하려는 우리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td> </tr> <tr> <td>종합고 졸업자</td> <td>• 일반계고교 중 구(舊) 종합고의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하려는 우리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자격	특성화고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특성화고교를 졸업(예정)하고, 지원하려는 우리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	종합고 졸업자	• 일반계고교 중 구(舊) 종합고의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하려는 우리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				
구분	지원자격										
특성화고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특성화고교를 졸업(예정)하고, 지원하려는 우리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										
종합고 졸업자	• 일반계고교 중 구(舊) 종합고의 전문계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하려는 우리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기준학과"를 충족한 자										
학생부교과 (기초/차상위 /한부모)	<p>-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으므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57 891 1425 1070">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td> <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구분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학생부교과 (예체능실기)	<p>-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p> <p>※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으므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p>										
학생부교과 (만학도)	<p>-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연령이 만 30세 이상(2026. 3. 1. 기준)인 자</p>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	<p>-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군 의무 복무 경력 포함)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 2026. 3. 1.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 후 재학기간에는 재직여부와 관계없음</p> <table border="1" data-bbox="357 1503 1445 2063">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고등학교</td> <td>•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td> </tr> <tr> <td>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td> <td>•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td> </tr> <tr> <td>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자</td> <td>•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td> </tr> <tr> <td>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이수자</td> <td>•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자격	일반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이수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구분	지원자격										
일반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이수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전형명	지원 자격						
학생부교과 (특수교육 대상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 등록자</td> <td>•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이등급자</td> <t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자격	장애인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상이등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장애인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상이등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						

나.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고교생활우수자Ⅰ, Ⅱ)	- 국내 고등학교의 석차등급 성적산출이 가능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학생부종합 (후계농업경영인)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자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그 자녀</td> <td>•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그 자녀</td> <td>•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자격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그 자녀	•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그 자녀	•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구분	지원자격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그 자녀	•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그 자녀	•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학생부종합 (조기취업형계약학과)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다. 실기/실적위주전형

전형명	지원자격
실기/실적 (예능실기)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단, 국외고 졸업자는 국내 고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취득한 성적이 기재된 학생부가 있는 자



가. 학생부교과전형

1) 학생부교과전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명	선발 단계	선발 배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학생부 [점수]	면접 [점수]	실기 [점수]	합계 [전형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일반) 학생부교과(지역인재) 	일괄	1배수	100% (100%) [1,000점]	-		100% (100%) [1,000점]	적용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지역균형)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 학생부교과(사회다양성)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한부모) 학생부교과(만학도)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일괄	1배수	100% (100%) [1,000점]	-		100% (100%) [1,000점]	일부적용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 	1단계	일정배수 ³⁾	100% (100%) [800점]	-		100% (100%) [800점]	적용
	2단계	1배수	80% (67.9%) [800점]		20% (32.1%) [200점]	100% [1,0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1단계	5배수	100% (100%) [800점]	-		100% (100%) [800점]	미적용
	2단계	1배수	80% (67.9%) [800점]	20% (32.1%) [200점]		100% [1,000점]	

※ ()안은 실질반영 비율임

1) 여수캠퍼스는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수산생명의학과, 해양경찰학과 제외)

2) 의학계열(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

3) 음악교육과 5배수, 체육교육과 3배수 선발

2) 학생부교과전형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명	전형요소		반영점수			반영비율		
			기본점수	실질점수	배점	명목비율	실질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일반)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지역균형)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 학생부교과(사회다양성)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한부모) 학생부교과(만학도)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학생부	석차등급산출과목 (공통/일반선택 등)	735	250	1,000	100%	100%	
		진로선택과목	0	15				
	합계		735	265	1,000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 	학생부	석차등급산출과목 (공통/일반선택 등)	588	200	800	80%	67.9%
			진로선택과목	0	12			
		실기	100	100	200	20%	32.1%	
		합계	688	312	1,000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학생부	석차등급산출과목 (공통/일반선택 등)	588	200	800	80%	67.9%
			진로선택과목	0	12			
		면접	100	100	200	20%	32.1%	
합계		688	312	1,000	100%	100%		



3)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반영 방법

가)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 성적 반영 교과(군) 및 과목

- 성적 반영 기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졸업자도 동일)
- 반영 교과(군)

구분	반영 교과(군)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제2외국어/한문
전 모집단위 (예/체능계열 제외)	○	○	○	○	○	○	○*
예능계열	○	○		○	○		
체육교육과	○	○	○	○			

* 제2외국어/한문 교과군은 인문대학 모집단위만 반영

- 반영 교과(군)의 이수 단위(학점) 및 과목 수

구분	석차등급산출과목	진로선택과목
반영 이수단위(학점) 및 반영 과목 수	반영 교과(군) 이수단위(학점) 전체	반영 교과(군) 중 상위 3과목

(2) 성적 반영 기준

- 석차등급산출과목(공통/일반선택 등)

구분	반영방법	비고
석차등급이 있는 경우	• 이수단위(학점) 및 학기별 과목 석차 등급 반영, 학기별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는 학년 석차등급을 학기별 석차등급으로 간주하여 반영	• 석차등급이 없는 소인수과목, 공동 교육과정 교과는 반영하지 않음 • 2007년 이전 졸업자는 석차백분율을 계산하여 과목 석차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
전 과목 석차 등급이 없는 경우	• 전 과목에서 석차등급이 없고, 표준 편차가 표기된 경우에는 표준점수를 활용하여 과목 석차등급으로 변환	• 전 과목 등급 미산출로 교과전형 지원이 불가능한 학교만 적용

- 진로선택과목

구분	반영방법	비고
진로선택 3과목 이상 이수자	• 성취도별 등급점수로 환산하여 성적 반영	• 진로선택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는 비교내신을 활용하여 성적 산출함

※ 이 외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대학교 입학관련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3) 성적 반영 방법

- 석차등급산출과목(공통/일반선택 등): 과목 석차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이수단위(학점) 반영)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0

- 진로선택과목: 과목 성취도를 점수화하여 반영

성취도	A	B	C
등급점수	15	9	3

- 학생부 반영 점수별 성적 산출식

전형구분	반영교과	산출식	산출점수	합계
일괄선발 전형	석차등급산출과목 (공통/일반선택 등)	기본점수 735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학점)})}{\text{반영과목 이수단위(학점)의 합}} \times 2.5$	985	1,000
	진로선택과목	$\frac{\text{상위 3과목 성취도의 합}}{3(\text{이수과목의 합})}$	15	
단계선발 전형	석차등급산출과목 (공통/일반선택 등)	기본점수 588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학점)})}{\text{반영과목 이수단위(학점)의 합}} \times 2.0$	788	800
	진로선택과목	$\frac{\text{상위 3과목 성취도의 합}}{3(\text{이수과목의 합})} \times 0.8$	12	

나) 국내 고등학교 중 1~9등급 이외의 성적 체계를 사용하는 학교 졸업(예정)자

(1) 성적 반영 기준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단,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성적 반영 기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졸업자도 동일)
- 단위(학점) 수가 없는 경우는 1단위로 산정
- 학기와 연 단위(학점)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연 단위(학점) 점수를 적용
- 정규학기(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

(2) 성적 반영 방법

취득성적 (등급/ 점수)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B	C	C	D	D	E, F
	97.0 이상	96.9~ 90.0	89.9~ 87.0	86.9~ 80.0	79.9~ 77.0	76.9~ 70.0	69.9~ 67.0	66.9~ 60.0	60 미만
환산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0

※ 취득성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3) 학생부 반영 점수별 성적 산출식: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성적 산출식과 동일



다)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 성적 반영 기준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단,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단위(학점) 수가 없는 경우는 1단위로 산정
- 학기와 연 단위(학점)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연 단위(학점) 점수를 적용
- 정규학기(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

(2) 성적 반영 방법

취득성적 (등급/ 점수)	A+	A, A-	B+	B, B-	C+	C, C-	D+	D, D-	E, F
		A		B		C		D	E, F
	97.0 이상	96.9~ 90.0	89.9~ 87.0	86.9~ 80.0	79.9~ 77.0	76.9~ 70.0	69.9~ 67.0	66.9~ 60.0	60 미만
환산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0

※ 취득성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3) 학생부 반영 점수별 성적 산출식: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성적 산출식과 동일

라) 검정고시 출신자

(1) 성적 반영 기준

-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전 과목 반영
- 취득성적 환산: 국어, 영어, 수학은 3단위, 나머지 과목은 1단위로 산출

(2) 성적 반영 방법

취득점수	100	99~95	94~90	89~85	84~80	79~70	69~60	59 이하
환산점수	88	85	80	75	70	62	52	0

(3) 학생부 반영 점수별 성적 산출식: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성적 산출식과 동일

4) 면접 반영 방법

전형명	평가 방법	전형자료	반영 점수 (기본점/만점)
•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 면접 ▶ 평가요소: 진로·학업역량, 공동체역량	학교생활기록부	100/200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실시함

※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전남대학교 면접 세부지침에 의거 실시함



5) 실기 반영 방법

전형명	모집단위		실기 과제	반영 점수 (기본점/만점)
학생부 교과 (예체능실기)	음악 교육 과	피아노	(1) F.Chopin Etude Op.10 또는 Op.25 중 1곡	100/200
			(2) L.v. Beethoven Piano Sonata 중 빠른 악장 1곡	
			(3) 청음	
		성악	(1) 이탈리아 가곡 또는 오페라 아리아 중 1곡	
			(2) 독일 가곡 중 1곡	
			(3) 청음	
	작곡	(1) 전통 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및 분석		
(2)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 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3) 청음				
관현악 관악	현악 관악	(1) 자유곡 1곡		
		(2) 청음		
체육교육과	(1) 100m달리기 (2) 지그재그런 (3) 체조 (4) 축구			

전형명	모집단위	평가 방법
학생부 교과 (예체능실기)	음악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전공 실기 분야별로 실기 실시 방법을 공지하고 다수의 평가위원이 정해진 채점 기준에 의해 평가함 • 청음: 8마디 단선율(2문제)을 들려준 후 선율을 적어 내도록 하여 이를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번 문제: 4/4박자 8마디 출제 박단위로 평가 ▶ 2번 문제: 3/4박자 8마디 출제 박단위로 평가

나. 학생부종합전형

1)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명	선발 단계	선발 배수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서류평가 (%)	면접평가 (%)	합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 ※ 광주캠퍼스 모집단위 • 학생부종합(후계농업경영인) 	1단계	3배수 ¹⁾	700 (100%)	-	700 (100%)	일부적용 ²⁾
	2단계	1배수	700 (70%)	300 (30%)	1,0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I) ※ 여수캠퍼스 모집단위 	일괄	1배수	1,000 (100%)	-	-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일괄	1배수	600 (60%)	400 (40%)	1,000 (100%)	미적용

1) 의학계열(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1단계 6배수를 선발함

2) 의학계열(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함

※ ()안은 실질반영 비율임



2)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명	전형요소	반영점수			반영비율	
		기본점수	실질점수	배점	명목비율	실질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 학생부종합(후계농업경영인) 	서류평가	350	350	700	70%	70%
	면접평가	150	150	300	30%	30%
	합계	500	500	1,000	100%	100%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II)	서류평가	500	500	1,000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서류평가	300	300	600	60%	60%
	면접평가	200	200	400	40%	40%
	합계	500	500	1,000	100%	100%

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법

전형명	평가 방법	전형자료	반영 점수 (기본점/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 학생부종합(후계농업경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평가 ▶ 평가요소: 진로역량, 학업역량, 공동체역량 	학교생활기록부	350/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평가 ▶ 평가요소: 진로·학업역량, 공동체역량 		150/300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평가 ▶ 평가요소: 진로역량, 학업역량, 공동체역량 	학교생활기록부	500/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평가 ▶ 평가요소: 진로역량, 학업역량, 공동체역량 	학교생활기록부	300/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평가 ▶ 평가요소: 진로·학업역량, 공동체역량 		200/400

※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전남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세부 지침에 의거 실시함

다. 실기/실적위주전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명	선발 단계	선발 배수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비율				
			학생부 (%)	면접 (%)	실기 (%)	합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기/실적(예능실기) 	음악학과, 국악학과	일괄선발	300 (18.5%)	-	700 (81.5%)	1,000 (100%)	
	미술학과	1단계	5배수	300 (100%)	-	-	300 (100%)
		2단계	1배수	300 (18.5%)	-	700 (81.5%)	1,000 (100%)
	디자인학과	1단계	5배수	400 (100%)	-	-	400 (100%)
		2단계	1배수	400 (26.1%)	-	600 (73.9%)	1,000 (100%)

※ ()안은 실질반영 비율임



2)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적용학과	전형요소		반영점수			반영비율	
			기본점수	실질점수	배점	명목비율	실질비율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제외)	학생부	석차등급산출과목 (공통/일반선택 등)	220.5	75	300	30%	18.5%
		진로선택	0	4.5			
	실기		350	350	700	70%	81.5%
	합계		570.5	429.5	1,000	100%	100%
•디자인학과	학생부	석차등급산출과목 (공통/일반선택 등)	294	100	400	40%	26.1%
		진로선택	0	6			
	실기		300	300	600	60%	73.9%
	합계		594	406	1,000	100%	100%

3)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

-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반영 방법 중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8쪽 참고)

4) 학생부 반영 점수 성적 산출식

적용학과	반영교과	산출식	산출점수	합계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제외)	석차등급산출과목 (공통/일반선택 등)	기본점수 220.5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학점)})}{\text{반영과목 이수단위(학점)의 합}} \times 0.75$	295.5	300
	진로선택과목	$\frac{\text{상위 3과목 성취도의 합}}{3(\text{이수과목의 합})} \times 0.3$	4.5	
•디자인학과	석차등급산출과목 (공통/일반선택 등)	기본점수 294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학점)})}{\text{반영과목 이수단위(학점)의 합}}$	394	400
	진로선택과목	$\frac{\text{상위 3과목 성취도의 합}}{3(\text{이수과목의 합})} \times 0.4$	6	



5) 실기 반영 방법

모집단위		실기 과제	반영점수 (기본점/만점)
음악 학과	피아노	(1) F.Chopin Etude Op.10 또는 Op.25 중 1곡	350/700
		(2) Lv.Beethoven Piano Sonata 중 빠른 악장 1곡	
	성악	(1) 이탈리아 가곡 또는 오페라 아리아 중 1곡	
		(2) 독일 가곡 중 1곡	
	작곡	(1) 전통 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및 분석	
(2)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 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3) 피아노 실기 자유곡 1곡(빠른 템포의 작품)			
관현악	(1) 자유곡 1곡		
국악 학과	국악성악	판소리 (1) 단가 중 1곡 / (2) 판소리 중 1곡	350/700
		가곡 (1) 평시조 중 1곡 / (2) 남창가곡, 여창가곡 중 1곡	
		가야금 병창 (1) 단가 중 1곡 / (2) 판소리 중 1곡	
	국악기악	현악 (1) 정악곡 중 1곡 / (2) 산조	
		관악 (1) 정악곡 중 1곡 / (2) 산조	
		타악 (1) 풍물가락 / (2) 판소리 장단 / (3) 산조 장단	
	국악작곡이론	국악작곡 (1) 전조를 포함한 화성풀이 및 분석 또는 주어진 주제에 의한 36마디 이상의 국악기 독주곡 작곡 중 택 1	
국악이론 (1) 국악기초이론			
미술 학과	한국화 (1) 수묵담채, 인물수채화, 인물수묵담채 중 택 1	300/600	
	서양화 (1) 인물수채화		
	조소 (1) 인체두상소조		
	공예 (1) 기초디자인, 점토 자유표현, 물레성형 중 택 1		
디자인학과	(1) 기초디자인(기초 조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의 해석과 표현)	300/600	



라. 학교폭력조치사항 성적반영 방법

1) 반영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포함)

2) 전형별 반영방법

모집구분	전형유형	반영방법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일괄감점
	학생부종합	정성평가

3) 일괄감점 반영점수

조치호수	학생부교과 / 실기실적 위주 전형
1호 ~ 3호	-5점
4호 ~ 5호	-10점
6호 ~ 9호	-20점

※ 단계선발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만 적용

4) 정성평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실시

전형명	전형유형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고교생활우수자 I) 학생부종합전형(후계농업경영인)	[1단계] 서류평가	정성평가
	[2단계] 면접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I)	[일괄선발] 서류평가	
학생부종합전형(조기취업형계약학과)	[일괄선발] 서류평가 및 면접	

5) 사례별 반영방법

가) 동일인의 다회 조치 발생 시 누적 적용하되 감점 최고점(수시 20점, 정시 50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

나) 동일 사안의 다수 조치 발생 시 조치호수 중 가장 높은 호수 반영



3

수능최저학력기준

모집단위	반영영역 국, 수, 영 탐구(1과목) 영역 중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고교생활 우수자 I
		일반	지역인재	지역균형/ 사회적배려 대상자/ 농어촌	
• 의과대학 ¹⁾	3개영역 합	-	5등급 이내	6등급 이내	5등급 이내
•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¹⁾	3개영역 합	5등급 이내	6등급 이내	7등급 이내	6등급 이내
•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²⁾	3개영역 합	6등급 이내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7등급 이내
• 경영대학	3개영역 합	9등급 이내	10등급 이내	미적용	미적용
• 간호대학, 자율전공학부	2개영역 합	6등급 이내	7등급 이내		
• 공과대학, 사범대학 ³⁾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 농업생명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산해양대학(수산생명의학과),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SI융합대학, 예술대학(미술학과 이론전공),		8등급 이내	9등급 이내		
• 공학대학, 문화사회과학대학, 수산해양대학(그 외 모집단위)	수능최저 미적용				

1)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수학포함 3개 영역의 합, 탐구 2과목 평균

2) 약학대학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한부모)는 3개 영역의 합 8등급 이내 적용

3)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체육교육과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는 2개 영역의 합 7등급 이내 적용

※ 전공예약 모집단위는 해당 학부(과) 기준과 동일

※ 지원자가 취득한 높은 등급을 자동 합산하여 반영하며, 한국사는 반영 영역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 모집단위는 영역별 세부 응시 조건을 충족해야 함

모집단위	영역별 세부 응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범대학(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 수의과대학(수의예과) • 약학대학(약학부) • 의과대학(의예과) •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 1, 과학탐구 2과목 필수 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과대학(산업공학과 외 전체) • SI융합대학(전체)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 1, 과학(직업)탐구 2과목 필수 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학대학(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 1



IV

정시모집

1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일반) 실기/실적(예능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대학 모집단위에서 정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포함) 반영 영역에 응시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지역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대학 모집단위에서 정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포함) 반영 영역에 응시한 자로서, 호남 지역(광주·전남·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입학부터 졸업까지)한 고등학교 졸업자(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

2

전형유형별 세부사항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비율	
				수능	실기
가/나/다군	수능 위주	수능(일반)	실기를 실시하는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100%	-
가/나군	수능 위주	수능(지역인재)	간호대학 간호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약학대학 약학부,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100%	-
나군 ¹⁾	수능 위주	수능(일반)	사범대학(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80%	20%
	실기/실적 위주	실기/실적(예능실기)	예술대학(디자인학과 제외)	30%	70%
			예술대학(디자인학과)	40%	60%

1)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이외 모집단위는 수시모집 미선발 인원 발생 시 모집함



나.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1) 수학 및 탐구영역 지정 모집단위

계열	대학(모집단위)	변환표준점수			등급점수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한국사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과대학(산업공학과 외 전체) SI융합대학(전체) 	선택 과목 미지정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 1	과탐/ 직탐 2과목	등급별 등급점수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범대학(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수의과대학(수의예과) 약학대학(약학부) 의과대학(의예과)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과탐 2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학대학(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탐구 2과목		

2) 수학 및 탐구영역 미지정 모집단위

계열	대학(모집단위)	변환표준점수			등급점수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한국사
인문·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전공학부(1년) 창의융합학부 	선택 과목 미지정	선택 과목 미지정	탐구 2과목	등급별 등급점수 반영	
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전공학부(4년) 경영대학(전체)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문화사회과학대학(문화콘텐츠학부 외 전체) 사범대학(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사회과학대학(전체) 인문대학(전체)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대학(간호학과) 공과대학(산업공학과) 공학대학(전체)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경제학과 외 전체) 문화사회과학대학(문화콘텐츠학부) 사범대학(가정교육과) 생활과학대학(전체) 수산해양대학(전체) 자연과학대학(지구환경과학부, 생물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기술학부) 					
체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범대학(체육교육과) 					
예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범대학(음악교육과) 예술대학(전체) 		미반영			



다.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계열	수능					등기점수	실기	전형 총점	
	변환표준점수(비율)				영어				
	국어	수학	탐구						
1과목			2과목						
인문, 인문·자연	320점 (32%)	240점 (24%)	120점 (12%)	120점 (12%)	200점 (20%)	1,000점 (100%)	-	1,000점	
자연	240점 (24%)	320점 (32%)	120점 (12%)	120점 (12%)	200점 (20%)	1,000점 (100%)	-	1,000점	
예 체 능 ¹⁾	미술학과(이론전공)	400점 (40%)	-	200점 (20%)	200점 (20%)	200점 (20%)	1,000점 (100%)	-	1,000점
	체육교육과	210점 (26.25%)	210점 (26.25%)	90점 (11.25%)	90점 (11.25%)	200점 (25%)	800점 (100%)	200점	1,000점
	음악교육과	300점 (37.5%)	-	150점 (18.75%)	150점 (18.75%)	200점 (25%)	800점 (100%)	200점	1,000점
	미술학과(이론전공제외) 국악학과 음악학과	100점 (33.3%)	-	50점 (16.7%)	50점 (16.7%)	100점 (33.3%)	300점 (100%)	700점	1,000점
	디자인학과	150점 (37.5%)	-	75점 (18.75%)	75점 (18.75%)	100점 (25%)	400점 (100%)	600점	1,000점

1)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이외 모집단위는 수시모집 미선발 인원 발생 시 모집함
 ※ 전 모집단위 한국사 가산점 적용함

<영역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

- **국어, 수학, 탐구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우리 대학이 자체 산출한 변환표준점수 반영(탐구영역은 반드시 2과목을 응시해야 함)
- **영어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등급을 활용하며, 우리 대학이 정한 등급별 등급점수 반영

수능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	수능위주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0
점수	실기/실적위주	100	95	90	85	80	75	70	65	0

- **한국사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등급을 활용하며, 우리 대학이 정한 등급별 등급점수를 전형총점에 가산하여 반영

수능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	8	7	0



라. 실기 반영 방법

모집단위		실기 과제	반영 점수 (기본점/만점)
음악대학 피아노과	피아노	(1) F.Chopin Etude Op.10 또는 Op.25 중 1곡	0/200
		(2) L.v. Beethoven Piano Sonata 중 빠른 악장 1곡	
	성악	(1) 이탈리아 가곡 또는 오페라 아리아 중 1곡	
		(2) 독일 가곡 중 1곡	
체육교육과		(1) 100m달리기 (2) 지그재그런 (3) 체조 (4) 축구	
음악학과	피아노	(1) F.Chopin Etude Op.10 또는 Op.25 중 1곡	0/700
		(2) L.v.Beethoven Piano Sonata 중 빠른 악장 1곡	
	성악	(1) 이탈리아 가곡 또는 오페라 아리아 중 1곡	
		(2) 독일 가곡 중 1곡	
	작곡	(1) 전통 화성 전반에 걸친 화성풀이 및 분석	
(2)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 형식의 피아노곡 작곡			
(3) 피아노 실기 자유곡 1곡(빠른 템포의 작품)			
관현악	(1) 자유곡 1곡		
국악학과	국악성악	판소리 (1) 단가 중 1곡 / (2) 판소리 중 1곡	0/700
		가곡 (1) 평시조 중 1곡 / (2) 남창가곡, 여창가곡 중 1곡	
		가야금 병창 (1) 단가 중 1곡 / (2) 판소리 중 1곡	
	국악기악	현악 (1) 정악곡 중 1곡 / (2) 산조	
		관악 (1) 정악곡 중 1곡 / (2) 산조	
		타악 (1) 풍물가락 / (2) 판소리 장단 / (3) 산조 장단	
	국악전통이론	국악작곡 (1) 전조를 포함한 화성풀이 및 분석 또는 주어진 주제에 의한 36마디 이상의 국악기 독주곡 작곡 중 택 1	
		국악이론 (1) 국악기초이론	
미술학과	한국화 (1) 수묵담채, 인물수채화, 인물수묵담채 중 택 1	0/600	
	서양화 (1) 인물수채화		
	조소 (1) 인체두상소조		
	공예 (1) 기초디자인, 점토 자유표현, 물레성형 중 택 1		
디자인학과		(1) 기초디자인(기초 조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의 해석과 표현)	0/600

※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이외 모집단위는 수시모집 미선발 인원 발생 시 모집함



마. 학교폭력조치사항 성적반영 방법

1) 반영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포함)

2) 전형별 반영방법

모집구분	전형유형	반영방법
정시모집	수능, 실기/실적, 학생부교과	일괄감점
	학생부종합	정성평가

3) 일괄감점 반영점수

조치호수	수능 위주 전형	학생부교과 / 실기실적 위주 전형
1호 ~ 3호	-15점	-5점
4호 ~ 5호	-25점	-10점
6호 ~ 9호	-50점	-20점

4) 정성평가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위원이 정성평가 실시

전형명	전형유형	반영방법
학생부종합전형(조기취업형계약학과)	[일괄선발] 서류평가 및 면접	정성평가

5) 사례별 반영방법

가) 동일인의 다회 조치 발생 시 누적 적용하되 감점 최고점(수시 20점, 정시 50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

나) 동일 사안의 다수 조치 발생 시 조치호수 중 가장 높은 호수 반영



바. 군별 모집단위 선발현황

단과대학	정시 가군	정시 나군	정시 다군
간호대학	간호학과(지역인재 포함)	-	-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제학부	-
공과대학	건축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전자컴퓨터공학부,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전기공학과, 생물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화학공학부, 산업공학과	-
공학대학 ◆	-	-	의공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임산공학과, 농생명화학, 식품공학과, 분자생명공학과, 바이오에너지공학과, 농업경제학과,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응용식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동물자원학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육학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가정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인류고고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지리학과	-
생활과학대학	생활복지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과학부	-
수산해양대학 ◆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수산광역
수의과대학	-	수의예과	-
약학대학	-	약학부(지역인재 포함)	-
예술대학	-	음악학과(피아노전공)	-
의과대학	의예과(지역인재 포함)	-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국어국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기술학부	수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지구환경과학부	-
AI융합대학	인공지능학부	미래모빌리티학과, 빅데이터융합학과	-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4년) 자율전공학부(1년)	-	-
치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지역인재 포함)	-	-

◆ 표기 된 단과대학은 여수캠퍼스에 소재함



사. 수시모집 미선발인원 정시모집 이월선발 계획

1) 전형별 반영 방법

구분	이월 전형	전형 방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일반) 학생부교과(지역인재)¹⁾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 학생부교과(사회다양성)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 II) 학생부종합(후계농업경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일반) 	【일괄선발】 수능 100%	모집단위 해당군으로 이월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 		【일괄선발】 수능 80%+실기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지역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지역균형) 	【일괄선발】 수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한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기초/차상위/한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농어촌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특성화고교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기/실적(예능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기/실적(예능실기) 	【일괄선발】 수능 + 실기 ※ 예술대학	정시 나군으로 이월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만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만학도) 	【일괄선발】 학생부 100% ※ 산업기술융합공학과(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 	【일괄선발】 서류평가 60% + 면접 40%	

1) 정시에서 수능(지역인재)을 실시하는 모집단위는 해당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

※ 전공예약 학과(전공) 결원 발생시, 해당 학부의 정시모집 일반전형 선발인원으로 이월함

2) 군별 모집단위 선발현황

단과대학	정시 가군	정시 나군	정시 다군
공학대학 ◆		산업기술융합공학과(야간), 스마트 응용설계공학과, 스마트CT융합공학과, 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	건축디자인학과, 석유화학소재공학과, 공학계열
문화사회과학대학 ◆		문화관광경영학과	국제학부(영어학전공), 국제학부(일본학전공), 국제학부(중국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부, 물류교통학과, 문화콘텐츠학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수산해양대학 ◆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기관시스템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해양수산광역
예술대학		음악학과(성악전공), 음악학과(작곡전공), 음악학과(관현악전공), 국악학과(국악성악전공, 국악작곡이론전공, 국악기악전공),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학무본부 ◆		창의융합학부	

◆ 표기 된 단과대학은 여수캠퍼스에 소재함



1. 법령상 지원 자격 구분에 따른 세부 지원 자격

모집인원	법령구분	세부 지원 자격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 재외국민 - 외국인 -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부·모·지원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으로 모집함(담당부서: 국제협력과)

2. 제1유형(입학정원 1% 이내 정원 외 모집)

- 1) 모집 인원: **40명 이내**
- 2) 지원자격: 공통 학력 요건 및 구분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공통 학력 요건

국내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한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구분	자격 요건	
국외 근무자의 자녀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국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 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구분	자격 요건	
	국외 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 체류일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입학 날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p>※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p>

3. 제2유형(입학정원 제한 없는 정원 외 모집)

공통 학력 요건
국외에서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북한이탈주민 제외)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지원 자격 구분	자격 요건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결혼이주민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4. 선발 방법

구분	내용
전형요소	면접 100%
평가항목 및 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진로·학업역량 및 공동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전남대학교 학부입시 홈페이지(<https://admission.jnu.ac.kr>)를 통해 공고합니다.

